한독 평가보상위원회 규정

2026. 10. 26

주식회사 한독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한독(이하 "회사"라 한다.) 정관 제31조의 3(위원회)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2조(이사회 내 위원회)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보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하다.)를 설치함에 있어 그 구성, 운영,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3조 (구성)

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 단,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겨 이를 충원할 경우, 충원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)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운 영

제4조 (소집)

① 위원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단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소집 시에는 회의일시, 소집목적, 장소를 기재하여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, 등기우편 기타 발송 및 착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③ 각 위원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이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조 (결의방법)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② 위원회 위원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참석하는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7조 (보고의무)

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.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결의내용을 위원회에서 재검토 및 결의를 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8조 (의사록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4 장 권 한

제9조 (부의사항 및 권한)

①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의 제안

②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 대한 보수의 제안

③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 대한 평가지표 및 보상체계의 수립

④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 5 장 기타사항

제10조 (간사)

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 처리한다.

제11조 (경비)

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12조 (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)

①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

부 칙(2025.03.11)

이 규정은 202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10.26)

이 규정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2025.03.11 제정, 2026.10.26 개정